

신고자
보호·보상
제도

안심하고 신고하세요~

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



신고자
보호
제도

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부패신고 및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신고자의
비밀을
보장합니다.

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.

신고자는
책임감면을
받을 수 있습니다.

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의 경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가 면제되며, 신고의 관련한 신고자의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.

신고자는
신분보장 조치를
위원회에
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, 징계 등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신고자는
신변보호 조치를
위원회에
요청할 수 있습니다.

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친족·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

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및 「청탁금지법」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,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(최대 30억 원 지급)

신고자
보상
제도



국민권익위원회